

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69호)

심사 보고서

1998. 3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3. 13

고 성 군 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3. 16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3. 1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사유

○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전구 등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포대를 제작하여 군민의 행정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폐전구, 유리 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삭제함.(안 제4조제1항)

나. 생활폐기물 중 폐전구,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도록 신설함.(안 제4조제4항)

다.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포대를 삽입하고(안 제11조제2항), 각 용도별 색깔을 표시함.
(안 동조제3항)

라. 쓰레기봉투의 제작시 포대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2조)

마. 쓰레기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신설함.(안 제13조제3항)

바.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을 신설함.(안 별지 2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주민생활의 편익과 쓰레기처리의 원활을 위해 현재의 쓰레기증량제 규격봉투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와 소규모 건축폐기物 처리를 위해 포대를 별도로 제작 보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지금은 규격봉투에 담지 못하는 1킬로그램미만의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처분했는데 앞으로 포대를 제작 보급하면 군민에게 작으나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군만 임의로 하는 조치인지 전 시군이 다같이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

● 답 : 도의 지시에 의거 전시군 공히 개정하게 되는 사항임.

6. 토론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1998. 3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